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8년도 현재액 | | 증 가 | | 감 소 | | '19년도 현재액 | | 비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합 계 | 30,243 | 1,477,891 | 528 | 59,447 | 38 | 6,542 | 30,733 | 1,530,795 | |
| 토 지 | 21,720 | 637,388 | 491 | 41,202 | 26 | 1,812 | 22,185 | 676,777 | |
| 건 물 | 499 | 275,727 | 17 | 17,639 | 8 | 4,358 | 508 | 289,008 | |
| 입목죽 | 864 | 4,684 | 0 | 0 | 0 | 0 | 864 | 4,684 | |
| 공작물 | 7,106 | 553,304 | 20 | 606 | 1 | 104 | 7,125 | 553,806 | |
| 기계기구 | 0 | 0 | 0 | 0 | 0 | 0 | 0 | 0 | |
| 선 박 | 1 | 49 | 0 | 0 | 0 | 0 | 1 | 49 | |
| 항공기 | 0 | 0 | 0 | 0 | 0 | 0 | 0 | 0 | |
| 무체재산 | 40 | 5,283 | 0 | 0 | 0 | 0 | 40 | 5,283 | |
| 유가증권 | 0 | 0 | 0 | 0 | 0 | 0 | 0 | 0 | |
| 용익물권 | 7 | 949 | 0 | 0 | 3 | 269 | 4 | 680 | |
| 회원권 | 6 | 509 | 0 | 0 | 0 | 0 | 6 | 509 | |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로확포장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소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등이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 '18년도 현재액 | | 증 가 | | 감 소 | | '19년도 현재액 | | 비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계 | 1,358 | 11,987 | 330 | 3,936 | 230 | 2,021 | 1,458 | 13,902 | |
| 구 매 | 1,349 | 11,723 | 94 | 1,052 | 14 | 335 | 1,429 | 12,440 | |
| 관리전환 | 0 | 0 | 236 | 2,884 | 212 | 1,678 | 24 | 1,206 | |
| 양 여 | 0 | 0 | 0 | 0 | 0 | 0 | 0 | 0 | |
| 기 타 | 9 | 264 | 0 | 0 | 4 | 8 | 5 | 256 | |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공유재산 | 991,635 | 1,039,014 | 1,290,422 | 1,477,891 | 1,530,795 |
| 물 품 | 13,724 | 10,825 | 11,007 | 11,987 | 13,902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재산가액은 529억원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토지 취득 등으로 재산가액이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주시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세출결산액 (A) | 출 자 금 | | 출 연 금 | | 비 고 |
|---------|--------------|--------|---------|--------|---------|-----|
| | | 금액 (B) | 비율(B/A) | 금액 (C) | 비율(C/A) | |
| 합 계 | 1,107,135 | 0 | 0% | 5,096 | 0.46% | |
| 일 반 회 계 | 882,832 | 0 | 0% | 5,096 | 0.58% | |
| 특 별 회 계 | 143,468 | 0 | 0% | 0 | 0% | |
| 기 금 | 80,835 | 0 | 0% | 0 | 0% | |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세출결산액 (A) | 578,127 | 621,522 | 651,844 | 677,510 | 1,107,135 |
| 출자금 (B) | 0 | 0 | 0 | 0 | 0 |
| 출자금 총액 (C) | 0 | 0 | 0 | 0 | 0 |
| 출자금 비율 (B/A) | 0% | 0% | 0% | 0% | 0% |
| 출연금 (D) | 3,302 | 3,864 | 8,651 | 7,115 | 5,096 |
| 출연금 비율 (D/A) | 0.57% | 0.62% | 1.33% | 1.05% | 0.46%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시 출자금은 없으며,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사유는 한마음장학회 자산 100억원 목표달성 후, 출연금 감소에 기인합니다.

❖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기관·단체명 | 금액 | 근거 (법·조례명 등) | 내용 | |
|-----|--------|----------------|-----------------|---|---------------------------------------|
| 출연금 | 소계 | 12개 | 5,096 | | |
| | 일반회계 | (재) 한국지역진흥재단 | 8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 | | 충남신용보증재단 | 100 | 공주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금 지급 |
| |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 267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백제세계유산센터 2019년도 출연금 |
| | | 공주대학교 | 200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9년 공주대학교 공주학 아카이브구축사업 출연금 |
| | |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 500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재)한마음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지급 |
| |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90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출연금 |
| | | 한국지방세연구원 | 11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
| | | 충남신용보증재단 | 100 | 공주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 2019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금 지급(2차) |
| | |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3,000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 위원회 조례 | 제65회 백제문화제 출연금 |
| | |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50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 위원회 조례 | 2019년도 제65회 백제문화제 출연금 지급 결의(2차분) |
| | |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 21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2019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
| | |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600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 위원회 조례 | 2019년도 제65회 백제문화제 출연금 지급 결의(3차분) |
| | | 충남신용보증재단 | 100 | 공주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 2019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금 지급(3차) |
| | | (재)충남연구원 | 5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납부 |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을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공주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 구 분 | | 임직원수 | 출자·출연금 | 자산 | 부채 |
|-------|--------------|------|--------|--------|----|
| 총 계 | | | | | |
| 출연 기관 |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16 | 521 | 14,011 | 0 |

-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공주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 임·직원수 | 총자산 | 총부채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경영평가 등급(가~마) |
|----|--------|-------|---------|-------|--------|--------|--------|--------------|
| 직영 | 공주시상수도 | 39 | 140,084 | 1,296 | 12,666 | 14,585 | -2,192 | 다 |
| | 공주시하수도 | 9 | 270,323 | 32 | 12,889 | 22,586 | -9,697 | 나 |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 구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직영 | 공주시상수도 | -2,971 | -935 | -613 | -2,933 | -2,192 |
| | 공주시하수도 | -8,489 | -8,863 | -8,492 | -8,332 | -9,697 |

- ☞ 공주시 상·하수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적자액은 100억원 내외로 부족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 상·하수도 공기업의 적자폭이 큰 이유는 2011년 이후 8년째 계속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면서 급수수익은 변화가 없음에 비해 총괄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그에 따른 요금현실화율이 상수도의 경우는 60%대에서 40%대로, 하수도의 경우는 20%대에서 5%대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제고로 당기순이익의 적자폭을 및 당기순이익의 적자폭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